

산자부의 산업기술 고시, 그 문언 범위 내 기술정보 BUT 실질적 판단기준 - 특유의 기술 요건 등 실무적 쟁점



1. 사안의 개요

- (1) 반도체 공정 중 세정기술 기술유출 사안 - 산자부 고시 산업기술의 문언적 범위 해당함 - 산업발전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관한 고시에서는 '반도체 부품/소재' 또는 '반도체 장비'와 관련하여 '습식 세정장비 기술'을 첨단기술로 지정하였는바, 문제의 위 각 도면 및 파일이 위 고시에서 규정하는 '습식 세정장비 기술'에 문언적으로 해당한다.
- (2) 쟁점 - 실질적으로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
- (3) 산업기술의 법리적 판단기준 및 구체적 사안의 판단 - 판결요지

2.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. 2. 16. 선고 2022고합42 판결 + 항소심 수원고등
법원 2024. 1. 9. 선고 2023노295 판결

(1) **법리적 판단기준** - 산업발전법은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의미나 그 구별기준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,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의미 등에 대해서는 그 문언인 기술 및 제품이 가지는 일반적인 의미와 용례 등을 토대로 산업발전법의 입법 목적과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를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, 또한 [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는 첨단기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](#)으로 '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것' 이외에 '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일 것'을 요구하고 있는 점, 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서 '대분류', '중분류', '소분류', '첨단기술 및 제품'으로 첨단기술을 세분화하고 있으나, 해당 기술 및 제품명이 추상적이고 광범위하여 그 기술 및 제품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술이 첨단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, 첨단 기술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가별성이 무제한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, 고시의 문언에 해당하는 모든 기술이 첨단기술이라고 할 수는 없고, **해당 기술 및 제품을 구현하는데 필수불가결하고, 밀접하게 관련된 특유의 기술**

만이 첨단기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.

(2) 구체적 사안의 판단: 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 규정된 '습식 세정장비 기술'은 그 문
언 및 용례상 건식(乾式)과 구분되는 습식(濕式), 즉 약액을 이용한 웨이퍼 세정
장비를 설계 및 제조하고 운용하는 기술로 볼 수 있다. 또한 피해회사의 첨단기
술 제품 신청서 및 신청기술 제품 설명서에는 '매엽식 세정장비의 핵심 기술은
Process 처리 기술, 약액 제어 기술로 크게 나뉩니다. Process 처리 기술은 웨이
퍼 위의 각종 Particle을 패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제거(세정~건조)하기 위
한 기술이며, 약액 제어 기술은 다양한 성분의 Particle을 제거하기 위해 원하는
온도, 용량의 약액을 공급하는 기술입니다.'로 기재되어 있다. (중략) 이러한 사정
에 비추어 본다면, 메인설비에 장착된 '챔버 내에서의 웨이퍼 세정 기술'이 '습식
세정장비 기술'과 밀접하게 관련된 **특유의 기술**이라고 할 것이다. 따라서 위 표
의 각 도면 및 파일이 '습식 세정장비 기술'과 밀접하게 관련된 특유의 기술이라
고 보기 어렵다. 그 이유는 ~~ 다음과 같다.

(3) 전부 아닌 일부분 공지기술이 포함되어도 산업기술 인정 - 산업기술보호법 제36
조 제2항, 제14조 제2호는 대상기관의 임·직원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

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 위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인 산업기술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·생산·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·고시·공고·인증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하고, 부정경쟁방지법에서의 영업비밀과 달리 비공지성(비밀성), 비밀유지성(비밀관리성), 경제적 유용성의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.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산업기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되고, 그 산업기술과 관련하여 특허등록이 이루어져 산업기술의 내용 일부가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산업기술이 전부 공개된 것이 아닌 이상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(대법원 2013. 12. 12. 선고 2013도12266 판결, 대법원 2021. 5. 7. 선고2020도17853 판결 등 참조).

기술탈취, 부정경쟁, 영업비밀, 손해배상, 형사고소, 민사소송, A~Z 수행경력

T. 02-591-0657 E. kkh@kasanlaw.com H. www.kasanlaw.com